

춘천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2고단581 뇌물공여
피 고 인 마 (57-2), 공무원
주거 시 로 , 동 호(동, 2차)
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면 리
검 사 장동철(기소), 김정훈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심준용
판 결 선 고 2012. 8. 16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1. 피고인은 2008. 6. 30.자로 시 보건소장인 김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보건소장직이 공석이 되자, 시 보건소에 6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 박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로

마음먹었다.

피고인은 2008. 6. 3.경 ■■■시 ■■■동 ■■■1차 ■■■호에 있는 위 박■■■의 집에서 박■■■의 처 김■■■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,000만 원을 교부하였다.

2. 피고인은 2008. 7. 14.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자, 위 박■■■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.

피고인은 2008. 7. 16.경부터 2008. 7. 25.경까지 사이에 ■■■시 ■■■로 ■■■에 있는 ■■■시청 시장실에서 박■■■에게 승진 대가로 1,000만 원을 교부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■■■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,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이■■■, 홍■■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(수사기록 제1759쪽, 제1766쪽)

1. 휴대전화 분석보고서(수사기록 제1052쪽)

1. 수사보고서(김■■■액면가 500만 원권 통상환 2장 발행내역 및 송금의뢰시간, 마■■■
■■■ 현금교환사실 확인, 수사기록 제1148쪽)

1. 수사보고(이■■■에 대한 뇌물공여 1심 판결문 사본, 사건상세조회 사본 첨부, 수사
기록 제1179쪽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형법 제133조 제1항, 제129조(각 징역형 선택)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)

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양형의 이유

[처단형의 범위] 징역 7년 6월 이하

[권고형의 범위] 뇌물공여 제2유형의 가중영역: 징역 6월 - 1년 6월

특별가중요소: 적극적 증퇴

[일반양형인자]

일반감경요소: 진지한 반성, 형사처벌 전력 없음

[집행유예 참작사유]

1. 주요참작사유

가. 긍정적: 현저한 개전의 정

나. 부정적: 적극적 증퇴

2. 일반참작사유

가. 긍정적: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

나. 부정적: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

3. 집행유예 선택: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앞서 든

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

[선고형의 결정]

피고인은 승진을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, 근절되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하였고,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,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, 특히 피고인은 2008. 6. 초순경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인 이■■■■과 공모하여 이■■■■이 피고인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이■■■■이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.

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, 기타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건강 상태,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.

판사 이진희 _____